##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74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6.

발 의 자:위성곤·김성환·김홍걸

민형배 • 양경숙 • 윤재갑

윤준병 • 이개호 • 홍성국

이소영 · 이용빈 · 이용선

허 영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.

그러나 「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%에 불과하여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 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함(안 제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집단에너지"를 "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집단에너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)	제3조(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	②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	
야 한다.	
1. <u>집단에너지</u> 공급에 관한 중	1.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집단
• 장기계획	<u>에너지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